

학점은행제규정

제정 2013.12. 4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국제대학교 학점은행제 운영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아래와 같다.

- ①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434호)에 의거하여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② 국제대학교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시하는 관련법규 및 운영 규정, 학사관리지침을 우선하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제대학교 학점은행제 운영에 적용한다.

제 4 조 (입학지원) 본 국제대학교 학점은행제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년도의 모집요강에서 정한 지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이상이어야 한다.

제 6 조 (선발방법) 학생모집은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일반전형은 심층면접 결과를 전형자료로 활용하여 선발한다.
- ② 특별전형은 포트폴리오 혹은 학업계획서와 심층면접 결과를 전형자료로 활용 선발한다.

제 7 조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평생교육진흥원 표준교육과정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 8 조 (학점이수 및 학위취득 요건) ① 학위취득을 위한 최소이수학점으로는 전문학사 2년제 학위취득의 경우 교양이수 15학점, 전공이수 45학점을 포함하여 최소 80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3년제 전문학사학위 취득의 경우는 교양이수 21학점, 전공이수 54학점을 포함하여 최소 120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학사학위 취득의 경우는 교양이수 30학점, 전공이수 60학점을 포함하여 최소 140학점 이수하여야 한다.

구분		교양이수	전공이수	총취득학점	취득학점 제한
전문 학사	2년제	최소 15학점	최소 45학점	최소 80학점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 이하
	3년제	최소 21학점	최소 54학점	최소 120학점	
학사		최소 30학점	최소 60학점	최소 140학점	

② 타전공의 경우 2년제 전문학사학위 취득의 경우 36학점이상,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의 경우는 48학점을 취득해야한다.

③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 범위 내에서만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 이수학점, 시간제 이수학점, 독학면제과정 이수학점 포함, 자격증학점, 독학시험 합격에 의한 학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경험 학점 불포함). 이를 초과할 시 초과한 학습과목에 대해서는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 9 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로 개설할 수 있다.

② 학점당 수업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수업) ① 교시당 수업시간을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② 휴강 시 보강 일정을 수립 및 공고하여야 하며, 보강계획서는 기관장의 결재 후 수합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출장, 회의 참석 등 예정된 휴강 시 다음 수업 전까지 휴강사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강계획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④ 갑작스런 사고 등 예상 못한 휴강 시 휴강사유 및 이로 인한 보강계획을 기관장(행정실)에 신고하여야 하며, 증빙자료와 보강계획에 의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 학점인정의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해당 학습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총시간의 10분의 8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출석률=출석시간수/총수업시간수×100%)

제12조(출석부 관리) ① 매주(시간) 출석점검 및 출결상황을 기입한다.

② 지각, 조퇴, 결석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기입한다.

③ 결강 및 보강일 기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3조(출석 성적 부여) ① 출석성적은 전체 성적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본 대학 출석점수 부여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학습자가 수업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군입대한 경우는 입대전의 출석률로 출석 성적을 인정한다.

제14조(공결) 아래 사항 해당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케 함으로써 해당 학습과목 수업시간 출석으로 인정한다.(단, 공결은 실수업 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① 직계가족의 사망 및 질병

② 병무 관계에 의한 결석

③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④ 각종 국가자격시험

⑤ 각종 대회출전 및 특별 훈련

⑥ 본인 결혼

⑦ 부모의 회갑 및 칠순 등

⑧ 직계 형제자매의 결혼

⑨ 본인의 신병

⑩ 출장 및 공무

⑪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제15조(시험) ① 시험은 정기평가(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과제물)는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며, 단 공결(제14조)에 따른 정기평가 미응시의 경우 추가시험 혹은 과제물로 대체 가능하며 성적은 'B+'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부정행위자는 학점을 불인정한다.

③ 학습과목별 시험답안지는 수합하여 2년간 보관한다.

④ 과제물을 평가하여 반드시 성적에 반영하여야 하며, 과제물은 기관장(행정실)이 수합하여 2년간 보관한다(과제물의 부피 등으로 인해 보관이 어려운 미술작품 등은 사진으로 보관한다).

⑤ 실험실습 평가 시에는 평가표를 작성하며, 평가표와 증빙자료는 2년간 기관장(행정실)이 수합하여 2년간 보관한다(실습과목 평가의 경우 실습근거자료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 테이프, 비디오, 사진 등으로 보관한다).

제16조(재수강) 동일한 과목을 재수강 한 경우는 상위 점수를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7조(성적부여) 과목별 성적분포의 표준화를 위하여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시된 상대평가 기준의 적용이 어려운 기관 과목의 경우 별도의 평가기준을 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한다.

제18조(성적인정) 성적이 만점의 10분의 6 이상인 경우에만 성적으로 인정한다.

제19조(성적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을 F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① 출석시간 수 10분의 8 미달의 경우
- ② 시험 부정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제20조(학습비 반환기준) 학습비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평생교육법시행령」 <별표 2>학습비 반환기준(제 23조제2항 관련)에 따라 환불한다.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출석점수 기준표

출석점수배점			비율 (%)	출석 및 결석 비율								
				45시간 (주당 3시간)			60시간 (주당 4시간)			75시간 (주당 5시간)		
20	10	5		비율 (%)	출석 횟수	결석 횟수	비율 (%)	출석 횟수	결석 횟수	비율 (%)	출석 횟수	결석 횟수
20	10	5	100	100	45	0	100	60	0	100	75	0
19	9	5	95	98	44	1	98	59	1	99	74	1
				96	43	2	97	58	2	97	73	2
							95	57	3	96	72	3
										95	71	4
18	8	4	90	93	42	3	93	56	4	93	70	5
				91	41	4	92	55	5	92	69	6
							90	54	6	91	68	7
17	7	3	85	89	40	5	88	53	7	89	67	8
				87	39	6	87	52	8	88	66	9
							85	51	9	87	65	10
										85	64	11
16	6	2	80	84	38	7	83	50	10	84	63	12
				82	37	8	82	49	11	83	62	13
				80	36	9	80	48	12	81	61	14
										80	60	15
15	5	1	75	78	35	10	78	47	13	79	59	16
				76	34	11	77	46	14	77	58	17
							75	45	15	76	57	18
14	4	0	70	73	33	12	73	44	16	75	56	19
				71	32	13	72	43	17	73	55	20
							70	42	18	72	54	21
										71	53	22

<별표 2>

학습비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규정
1.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 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